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10. 13.

다. 상정일자: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10. 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추가(안 제6조제5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제9조, 제10조)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 신설함.

- 선정 대리인 신설(안 제8장)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31조)
-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규정 신설(안 제32조)
-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규정 신설(안 제3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부칙 제2조)

○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로 이동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 입법예고: 2025. 9. 4.~9. 24.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① 주요 개정내용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제5호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편입
- 제8장 ‘선정 대리인’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제8장‘선정 대리인’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에 관한 조항 이관

- 제31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이관
- 제32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규정 이관
- 제33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규정 이관
-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제9장으로 이동
 -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제33조(시행규칙)를 각각 제34조, 제35조, 제36조로 이동

②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비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조세 불복 절차의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납세자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구 지방세 불복청구 현황

구분	계(인용)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선정 대리인 처리건수		비 고
		구세(인용)	시세(인용)	구세(인용)	시세(인용)	구세(인용)	시세(인용)	
2025년	5(0)	-	4(0)	-	1(0)	-	-	
2024년	35(11)	-	25(10)	4(0)	6(1)	-	-	
2023년	14(4)	-	1(0)	4(0)	9(4)	-	-	

※ 서울시 선정 대리인 처리건수: 25년(3건), 24년(4건), 23년(1건)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4.12.31.)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불복 청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또는 별도 운영지침을 조속히 제정하여 수당 지급 기준, 서울시 위촉 절차,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권한 · 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 · 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 · 법률 ·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